

##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범위

### ○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범위

다음과 같은 경우는 청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해도 보험진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의료비의 전액이 자기부담이 됩니다.

- 건강진단
- 종합건강검진
- 예방주사
- 정상적인 임신, 출산
- 치열교정
- 경도의 액취 및 기미
- 미용성형
-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 등

※싸움이나 만취, 범죄로 인한 상병(傷病)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근무자(시간제 근무자 등 포함)의 업무 중 또는 통근 중에 발생한 상병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.

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-35-3120

※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